

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⑥ 특례적용대상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②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

⑦ 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	년 월 일
⑧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
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	

③ 요건충족 여부(⑩)

⑧ ≤ [⑨×5]	☐ 요건 충족
⑧ > [⑨×5]	☐ 요건 미충족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1부. (다만,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신청인란(①란 내지 ⑤란)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2.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.
3. ⑦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.
4. ⑧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5. 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6.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√표기하고,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√표기합니다.